

○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가입국 현황 : 미.영.중.불.독.러 등 104개국

지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22개국)	중국, 몽골, 키르기스스탄, 호주,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셜군도, 사모아, 세이셸제도, 통가, 니우에, 그루지야, 오만,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유럽 (47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몬테네그로
북미(1개국) 중남미(24개국)	미국,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류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아프리카(10개국)	카보베르데, 상투메 프린시페,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말라위, 모리셔스

1. 가입국 출신 (사립학교 출신인 경우 먼저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 발급기관 :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대한민국의 경우 외교통상부)

※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기관 정보는 [www.hcch.net](http://www.hcch.net) - Apostille Section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cch.net/index\\_en.php?act=conventions.status&cid=41](http://www.hcch.net/index_en.php?act=conventions.status&cid=41))

([http://www.hcch.net/index\\_en.php?act=conventions.authorities&cid=41](http://www.hcch.net/index_en.php?act=conventions.authorities&cid=41))

- 제출방법 : 위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참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으로 대체 가능함.

2. 미가입국 출신

-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 발급기관 :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

- 제출방법 : 위 제출서류에 대한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3. 중국에서 졸업한 경우

- 학위(학사, 석사)의 증명은 China Academic Degrees & Graduate Education Information (<http://www.cdgc.edu.cn>)의 학위증명서(중문 출력본)를 제출

4. 주의사항

- 아포스티유/ 영사인증의 경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